

의안번호	제 411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12월 12일 (제316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2년 11월 2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제 411 호

제출연월일 : 2012년 11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도내 여성들의 교육, 문화, 교류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여성중심 복합공간을 건립하고,
- 영동군 중심의 남부지역 특화 와인산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와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와인연구소를 신축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여성중심복합공간 건립》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17 일원(현 여성발전센터)
- 사업기간 : 2013. 3. ~ 2015. 12.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400㎡
- 사업비 : 5,280백만원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 위치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 46-1 일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3필지 29,357㎡(군유지 교환취득) ※ 세부내역 따로붙임
 - 건물신축 : 지상 2층 연면적 1,200㎡
- 사업비 : 2,300백만원(광특 1,150, 도비 1,150)

□ 재산의 처분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신축부지 교환처분》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29-72 일원
- 처분면적 : 23필지 18,657m² ※ 세부내역 따로 붙임
- 사업기간 : 2013. 1. ~ 2013. 2.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 건	29,357	1,467,850				
	건물	2 건	3,600	7,580,000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17번지 일원	2,400	5,280,000	2013~ 2015	여성중심복합공간 건립	-	신축
	기타							
2	토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 46-1번지 등 13필	29,357	1,467,850	2013.2	와인연구소 신축 부지 확보	영동군	교환 취득
	건물	“	1,200	2,300,000	2013.12	와인연구소 신축	-	신축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2013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14-3)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분 시 기	처 분 사 유	처분재산 전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 건	18,657	1,467,325				
	건물							
	기타							
1	토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29-72 등 23필지	18,657	1,467,325	2013.2	와인연구소 신축 부지 교환 처분	충청북도	교환 처분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와인연구소 신축부지 교환 재산목록

□ 취득재산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수 량			
		합 계	29,357	1,467,850		
1	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46-1	16,067	803,350	2013.2	영동군
2	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64	379	18,950	"	"
3	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64-1	1,765	88,250	"	"
4	과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66-1	125	6,250	"	"
5	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69	527	26,350	"	"
6	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70	922	46,100	"	"
7	과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70-1	3,081	154,050	"	"
8	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70-2	526	26,300	"	"
9	과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71	3,382	169,100	"	"
10	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71-1	486	24,300	"	"
11	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71-2	1,319	65,950	"	"
12	답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72	11	550	"	"
13	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47	767	38,350	"	"

□ 처분재산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처분시기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수 량			
		합 계	18,657	1,467,325		
1	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29-72	1,298	649,000	2013.2	충북도
2	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67-5	80	24,000	"	"
3	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67-6	89	26,700	"	"
4	천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67-77	93	27,900	"	"
5	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67-103	93	27,900	"	"

관계 법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